

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

「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제3항」에 따라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(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)에 대한 검정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,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월 12일

고용노동부장관

1. 사업개요

-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,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, 자격증의 교부·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

주무부처	대상종목
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	3D프린터개발산업기사
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	3D프린터운용기능사
농림축산식품부·식품의약품안전처	식육가공기사
해양수산부	잠수기능장
농촌진흥청	농작업안전보건기사

2. 신청자격

-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제4항」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

3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1. 12.(금) ~ 2. 1.(목)
 - ※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
-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

4. 구비서류(각 5부)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

- ① 검정시설·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검정실시능력·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※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
-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
 - ※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검정관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
-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(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 계획,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. 기타

- 접수처: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

전화: 044-202-7298, 팩스: 044-202-8035

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(우)30117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(첨부자료)을 참고하기 바람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.

2.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. 끝.